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11 선고 2022가단51866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10. 28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1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0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7,684,224원 및 그 중 7,285,642원에 대하여 2018. 12. 13.부터 2019. 12. 31.까지는 연 10%, 2020. 1. 1.부터 2022. 10. 28.까지는 연 7%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위 1.항 기재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미경

별지